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 4. 9.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 3. 27.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7. 3. 27.

다. 상정일자 : 제12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7.4.6)

상정, 심사, 보류

제12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7.4.9)

상정, 심사, 수정가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김정호 교육지원과장)

가. 제안이유

-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포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평생학습의 진흥에 관한 사항
 - 구청장은 평생학습 도시 조성 및 평생학습 진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안 제3조)
- 평생학습협의회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평생학습협의회 설치 (안 제4조)
 - 평생학습협의회 기능 (안 제4조)
 - 평생학습 기본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평생학습 관련 단체·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평생학습협의회 기능 (안 제4조)
 - 평생학습 기본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평생학습 관련 단체·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마포구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안 제5조)
 -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함.
 - 위원은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기관 및 시설의 장 또는 사회단체 대표자, 학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 평생학습센터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센터 설치 (안 제9조)
 -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 증진을 위하여 마포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 평생학습센터의 기능 (안 10조)
 -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연구
 -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
 -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등

다. 개정근거

- 「평생교육법」 제9조 (2001.1.29 법률 제6400호)

3.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 제1조에 규정된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 도시 재구조화운동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간 연계, 지역사회간 연계시킴으로써 네트워킹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지역사회운동이라 할 수 있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1년부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시작하였고, 첫 해인 2001년 경기도 광명시, 전북 진안군, 대전시 유성구 등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하였으며, 2006년 12월말 현재 전국 57개 지자체를 평생학습도시로 선정하였음.

서울시 각 구별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종로구와 중랑구 등 8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일부 구에서 제정 중에 있음.

-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평생학습 기본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평생학습 관련 단체·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마포구 평생학습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회의소집과 수당 등을 규정하였고,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기관·시설간의 협력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평생학습센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마포구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음.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평생학습 관련기관·단체의 협력이 요구되고, 평생학습도시 계획수립 및 운영에 있어 지역에 있는 모든 학습 기회를 종합적으로 파악, 상호 연락과 조정 업무를 포함하는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분야의 인사를 선정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과 평생학습협의회에서 조정·협의하여야 할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평생학습 관련 단체·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일부 중복되어 기능과 역할분담에 다소 혼선

이 우려됨.

- 안 제9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마포구 평생학습센터는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 증진,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평생학습 관련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의 모든 학습 자원과 지자체의 행정 지원을 연결하는 핵심 추진조직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지역 전체의 평생학습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등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을 자원봉사자로 육성하여 평생교육 지도자로 활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지원과장이 소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07. 4. 6.

제안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마포구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를 억제하고,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가.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지원과장에게 소장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제1항).
- 나.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관련규정을 삭제함
(안 제14조 내지 안 제17조).
- 다.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신설 (안 제15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지원과장에게 소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안 제14조 내지 안 제17조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18조를 안 제14조로 하며, 동조 제1항 중 “수강료를”을 “수강료 등을”로 한다.

안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안 제19조 및 안 제20조를 각각 제4장 다음에 안 제16조 및 안 제17조로 한다.

수 정 안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제13조(운영요원 등) ①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장과 평생교육사 및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13조(운영요원 등) ①----- ----- ----. 다만,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지원과장에게 소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생략)	② (원안과 같음)
제14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삭 제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학습센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기관 및 시설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기타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원 안	수 정 안
<u>제15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②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된다.</u> <u>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민간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u> <u>1. 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u> <u>2. 평생학습 관계자</u> <u>3. 평생학습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u> <u>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u> <u>⑤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팀장이 된다.</u> <u>⑥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u>	<u>제15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 삭 제</u>

원 안	수 정 안
<u>제16조(회의)</u>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제16조(회의) 삭 제</u>
<u>제17조(수당 등)</u>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u>제17조(수당 등) 삭 제</u>
<u>제18조(수강료 징수 등)</u> ①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u>수강료</u>를 징수할 수 있다. ②~③(생략)	<u>제14조(수강료 징수 등)</u> ①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u>수강료</u>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원안 제18조제1항 내용 일부 수정) ②~③ (원안 제18조 ②~③과 같음)

원 안	수 정 안
〈신 설〉 <u>제19조(공동추진 등)</u> 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u>제20조(시행규칙)</u> (생략)	<u>제15조(자원봉사자)</u>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u>제16조(공동추진 등)</u> (원안 제19조와 같음) <u>제17조(시행규칙)</u> (원안 제20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7. 3.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포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학습의 진흥에 관한 사항

- (1) 구청장은 평생학습 도시 조성 및 평생학습 진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안 제3조)

나. 평생학습협의회에 관한 사항

- (1)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평생학습협의회 설치 (안 제4조)
- (2) 평생학습협의회 기능 (안 제4조)
 - (가) 평생학습 기본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평생학습 관련 단체·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3) 마포구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안 제5조)
 - (가)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함.
 - (나) 위원은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기관 및 시설의 장 또는 사회단체 대표자, 학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다. 평생학습센터에 관한 사항

(1) 평생학습센터 설치 (안 제9조)

(가)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 증진을 위하여 마포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2) 평생학습센터의 기능 (안 10조)

(가)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연구

(나)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다) 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

(라)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마)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바) 평생학습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등

3. 제정근거 : 「평생교육법」 제9조 (2001.1.29 법률 제6400호)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2007년 추경 및 2008년 예산 편성시 반영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7. 2. 8 ~ 2.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7.3.14)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평생학습”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

②“평생학습센터”라 함은 평생학습에 대한 연구·정책개발·평생학습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평생교육사”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 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제3조(평생학습의 진흥) ①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노력한다.

②구청장은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관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학습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2장 평생학습협의회

제4조(설치 및 기능) ①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 기본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평생학습 관련 단체·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및 위원) ①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된다.

③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기관 및 시설의 장 또는 사회단체 대표자, 학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⑥구청장은 위촉 위원 본인의 면직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⑦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⑧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과장이 된다.

⑨협의회는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기타 관련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협의회)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기관·시설간의 협력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실무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평생학습센터

제9조(설치) ①구청장은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평생학습센터는 구 관할구역 내에 둔다.

제10조(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
4.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평생학습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7. 기타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운영) ①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에게 평생학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운영비 등 지원) 구청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요원 등) ①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장
과 평생교육사 및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직원의 자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학습센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기관 및 시설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기타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

-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된다.
-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민간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
 2. 평생학습 관계자
 3. 평생학습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⑤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팀장이 된다.
- ⑥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회의)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수강료 징수 등) ①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학습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협의회 의견 고려하여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수강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보 칙

제19조(공동추진 등) 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